

[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

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팬택자산관리 또는 피고가 엠팩 LA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료를 수령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팬택자산관리 또는 피고가 엠팩 LA로부터 2015년 4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수령한 실시료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내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그 전체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이 사건 직무발명의 유상 실시허락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실시료 수입이 발생할 때 비로소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이행기)에 관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를 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 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²⁾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는 법정채권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직무발

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하이닉스에게 승계한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②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원고들이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하이닉스에게 승계한 것'이고, 그 승계시점이 팬택자산관리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개시신청 이전인 이상, 그 중 일부의 지급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